

[일련번호 : 28]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업무 처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따르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발급신청서 상의 서명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여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

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2022~2024년 청소년증 발급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대장을 비치하지 않았고, 1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증은 가족정책과에 송부하여 파기처리를 해야함에도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1년 이상 장기보관하거나 임의로 자체폐기를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청소년증 파기업무 부적정 내역

구분	부적정 내역
2022~2024년	2024년 1~9월 제외 교부대장 없음
2022~2024년	1년 이상 미수령 증은 가족정책과 공문 송부하여 폐기하여야 하나 장기보관하거나 자체 폐기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교부 시 대상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있었으며, 2022~2023년 대장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 판단하여 보관기간 1년 후 파기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5.7월 현재까지도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구비·관리하고 있으나 2024.10~12월의 발급대장을 2025.1월 중 파기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관련 신청접수·교부·파기 등 업무 전반을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구청 담당부서로 전자 공문과 함께 파기 대상 청소년증을 발송하는 등 청소년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생산한 기록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파기하고 파기 방법에 대한 규정 숙지도 부족한 등 해당 업무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기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